

서울교육대학교 - 보훈교육연구원
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보훈교육연구원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보훈교육연구원의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나라사랑 선양을 위한 대학생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
2. 나라사랑 선양교육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인적자원 교류
3.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협조

제3조(협력기간)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효력이 연장된다.

제4조(비밀유지)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본 조의 의무는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.

제5조(수정 및 변경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로 협의 및 합의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① 각 사업의 구체적 추진은 양 기관 관련부서 간 세부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한다.

②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 년 4 월 / 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신항균



보훈교육연구원
http://www.bohunedu.or.kr
보훈교육연구원
원장 오일환